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0000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신고사건 접수·배정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 소관인 신고사건 접수·분류 업무를 본부로 조정하며, 신규 인력수요와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 정원 1명을 심사보호국 신고자보호과로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00. 00. 시행)됨에 따라 하부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이체 인력의 직급별 인원을 조정하는 한편, 하부조직 명칭 및 일부 분장사무를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18. ~ 4.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청렴총괄과**”를 “**청렴정책총괄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렴총괄과장**”을 “**청렴정책총괄과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부패심사과**”를 “**부패심사과, 공공재정환수제도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신고, 복지·보조금**”을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복지·보조금**”으로, “**공익신고**”를 “**공익신고(이하 “부패 관련 각종 신고”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6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패 관련 각종 신고자에 대한 안내·상담 지원

8. 부패 관련 각종 신고의 접수 및 분류

⑤ 공공재정환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련 교육 및 홍보
 4.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제도의 상담 및 해석
 5.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통계
 6.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각급기관 제도운영 지원
 7.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공공기관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과 그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의 이행이나 제도개선의 권고
 8.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과 관련된 기관·단체·기업과의 정책 협의
 9. 공공재정환수 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총괄
 10. 그 밖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6조의2제6항(중전의 제5항)제1호 중 “**복지·보조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제도와 **복지·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복지·보조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제도 및 **복지·보조금**”으로 하

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복지·보조금**”을 각각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및 **복지·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복지·보조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자, **복지·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밖에**”를 “**밖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로 하고, 제6조의2 제9항(중전의 제8항)제3호 중 “**지급·상환·환수**”를 “**지급·상환·반환**”으로, “**지급·환수**”를 “**지급·반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공익신고자**”를 각각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련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제9조의2 제4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패 관련 각종 신고에 관한 안내·상담
2. 합동민원센터로 접수되는 부패 관련 각종 신고의 전자정보시스템 등록 및 이관
3. 부패 관련 각종 신고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고충민원 및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의 접수·심사·분류·배정
5. 합동민원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의 온라인국민참여포털 등록·심사·이송·분류·배정

제9조의3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반부패·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공기관 보급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민원상담을 담당하는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청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
(6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장의 제목 “한시정원”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공공재정환수제도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2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
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②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별표 1 총계 “466”을 “471”로 하고, 일반직 계 “458”을 “463”으로 하며,
검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부감사관·공
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시설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48”을 “150”으로 하고,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
사·공업주사·관세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방송통신주사·보

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
·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1”을 “134”로 한다.

별표 1의2 총계 “469”를 “474”로 하고, 일반직 계 “461”을 “466”으로 하
며, 검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부감사관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
무관·시설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
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48”을 “150”으로 하고, 행정주사·감사주사·검
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방송통신주사
·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
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1”을 “134”로 한다.

별표 2 총계 “59”를 “54”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
외한다) 및 일반직 계 “58”을 각각 “5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검찰사무
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부감사관·사회복지사무관
·시설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8”을 “16”으로 하고, 행정주사·감
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보
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
·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5”를 “12”로 한다.

별표 6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6조를 신설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5조 관련)

제15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6조 관련)

제16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0000년 00월 00일)

총계	5
일반직 계	5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부패방지국) ① (생략)	제6조(부패방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부패방지국에 청렴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영향분석과, 청탁금지제도과 및 행동강령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청렴정책총괄과-----
③ 청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청렴정책총괄과장-----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심사보호국) ① (생략)	제6조의2(심사보호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보호국에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호과 및 신고자보상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부패심사과, 공공재정환수제도과-----
③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복지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공익신고의 처리 관련 통계의 관리 · 분석 및 활용

7. 부패행위 신고자, 부정청탁 신고자, 금품 등 수수 신고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복지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안내 · 상담 지원

<신설>

8. ~ 28. (생략)

④ (생략)

⑤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제도의 운영 및 신고의 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

2. 복지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사 · 수

6. -----
-----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복지 · 보조금 ----- 공익신고(이하 “부패 관련 각종 신고”라 한다)-----

7. 부패 관련 각종 신고자에 대한 안내 · 상담 지원

8. 부패 관련 각종 신고의 접수 및 분류

9. ~ 29. (현행 제8호부터 제28호까지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⑥ -----

1.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제도와 복지 · 보조금 -----

2.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제도 및 복지 · 보조금 -----

사·감사 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를	-----		법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u>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u> 의 경위 및 취지의 확인	3. <u>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u> 및 <u>복지·보조금</u> ----		3. <u>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u> 및 <u>부정이익 환수</u> 등에 관련 <u>교육 및 홍보</u>
4. <u>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u> 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요구	4. <u>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u> 및 <u>복지·보조금</u> -----		4. <u>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u> 및 <u>부정이익 환수</u> 등에 관한 <u>법제도의 상담 및 해석</u>
5. <u>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u> 사항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5. <u>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u> 및 <u>복지·보조금</u> -----		5. <u>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u> 및 <u>부정이익 환수</u>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u>실태조사</u> 및 <u>자료의 수집·관리·분석·통계</u>
6. <u>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u>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 여부의 확인	6. <u>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u> 자, <u>복지·보조금</u> -----		6. <u>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u> 및 <u>부정이익 환수</u> 등에 관한 <u>각급기관 제도운영 지원</u>
7. ~ 14. (생략)	7. ~ 14. (현행과 같음)		7. <u>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u> 및 <u>부정이익 환수</u> 등에 관한 <u>공공기관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과 그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의 이행이나 제도개선 의 권고</u>
15. 그 밖에 <u>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u> 및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15. -- <u>밖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u> , -----		8. <u>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u> 및 <u>부정이익 환수</u> 등과 관련된 <u>기관·단체·기업과의 정책 협의</u>
<신 설>	⑤ <u>공공재정환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9. <u>공공재정환수 정보시스템의</u>
	1. <u>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u> 및 <u>부정이익 환수</u> 등에 관한 <u>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조정</u>		
	2. <u>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u> 및 <u>부정이익 환수</u> 등에 관한		

	구축·관리 및 운영 총괄
	10. 그 밖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업무 중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련된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16. (생 략)	17. (현행 16호와 같음)
⑧ 신고자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신고자 보상금의 지급·상환·환수 및 포상금의 지급·환수에 관한 사항	3. ----- 지급·상환·반환 ----- 지급·반환-----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상담·접수 및 조사	8.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
9. 공익신고자 구조금의 지급·환수 및 대위청구에 관한 사항	9.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련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9조의2(정부합동민원센터) ① ~ ③ (생 략)	제9조의2(정부합동민원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부패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공익신고(이하 “부패 관련 각종 신고”라 한다) 및 고충민원의 분류	<삭 제>
2. 부패 관련 각종 신고에 관한 안내·상담 및 신고의 접수	<삭 제>
3. 부패 관련 각종 신고에 관한 방문 민원의 접수	<삭 제>
4. 부패 관련 각종 신고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삭 제>
5. 고충민원 및 위원회 관련 일 반민원의 접수·배정	<삭 제>
6. 합동민원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의 온라인국민참여시스템 등록·분류 및 이송	<삭 제>
<신 설>	④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다음 사

	<u>항을 분장한다.</u> 1. 부패 관련 각종 신고에 관한 <u>안내·상담</u> 2. 합동민원센터로 접수되는 부 <u>패 관련 각종 신고의 전자정</u> <u>보시스템 등록 및 이관</u> 3. 부패 관련 각종 신고에 관한 <u>방문 민원의 접수</u> 4. 고충민원 및 위원회 관련 일 <u>반민원의 접수·심사·분류·</u> <u>배정</u> 5. 합동민원센터로 접수되는 민 <u>원의 온라인국민참여포털 등</u> <u>록·심사·이송·분류·배정</u>
⑤ ~ ⑧ (생 략) 제9조의3(청렴연수원) ①·② (생 략)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u>반부패·청렴 및 권익구제</u> <u>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공기</u> <u>관 보급에 관한 사항</u> 4. ~ 17. (생 략)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청렴연수원)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17. (현행과 같음) ④ ----- -----.

1. (생 략) <신 설> 2. ~ 9. (생 략)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6장 <u>한시정원</u>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u>반부패·청렴 및 권익구제</u> <u>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공기</u> <u>관 보급에 관한 사항</u> 3. ~ 10. (현행 제2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정부합동민원센터에 두는 공</u> <u>무원의 정원 중 민원상담을 담</u> <u>당하는 3명(5급 3명)은 임기제</u> <u>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u> ④ <u>청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u> <u>정원 중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u> <u>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 공</u> <u>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u> 제6장 <u>한시조직 및 한시정원</u> 제16조(공공재정환수제도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00 00년 0월 00일까지 별표 6에 따 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에 둔다. ② <u>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과장</u> <u>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u> <u>한다.</u>
---	--

신·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466</u>	<u>471</u>	+5
·	·	·	
·	·	·	
일반직 계	<u>458</u>	<u>463</u>	+5
·	·	·	
·	·	·	
검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 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부감 서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 ·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 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148</u>	<u>150</u>	+2
·	·	·	
·	·	·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 ·공업주사·관세주사·농업주 사·마약주사·방송통신주 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 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 ·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 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 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u>131</u>	<u>134</u>	+3
·	·	·	
·	·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69</u>	<u>474</u>	+5
·	·	·	
·	·	·	
일반직 계	<u>461</u>	<u>466</u>	+5
·	·	·	
·	·	·	
검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 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부감 사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관 · 임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 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148</u>	<u>150</u>	+2
·	·	·	
·	·	·	

행정주사 · 감사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 관세주사 · 농업주 사 · 마약수사주사 · 방송통신주 사 · 보건주사 · 보호주사 · 사회 복지주사 · 세무주사 · 시설주사 · 식품위생주사 · 임업주사 · 전 산주사 · 출입국관리주사 · 통계 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u>131</u>	<u>134</u>	+3
·	·	·	
·	·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정부합동민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9</u>	<u>54</u>	-5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58</u>	<u>53</u>	-5
일반직 계	<u>58</u>	<u>53</u>	-5
.	.	.	
.	.	.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 관·부감사관·사회복지사무관 ·시설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 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18</u>	<u>16</u>	-2
.	.	.	
.	.	.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 ·공업주사·관세주사·농업주 사·마약수사주사·보건주사· 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 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 ·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 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 주사 또는 환경주사	<u>15</u>	<u>12</u>	-3
.	.	.	
.	.	.	